

# 경상북도

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 4818 호 2004. 4. 19. (월)

|   |         |
|---|---------|
| 선 | 기 관 의 장 |
| 람 |         |

## 경 상 북 도

### ■ 훈 령

- 경상북도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제1183호) ..... 3

### ■ 고 시

- 2004년도골재채취예정지지정고시(제2004-81호) ..... 18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가시(제2004-82호) ..... 19
- 사방지의지정변경고시(제2004-83호) ..... 20
- 사방지의지정고시(제2004-84호) ..... 21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가시(제2004-85호) ..... 22

### ■ 공 고

-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행정처분통지서공시송달공고(제2004-143호) ..... 23
- 2004세계일류중소기업지정·육성계획공고(제2004-144호) ..... 23
- 경상북도의회부의안전공고(제2004-150호) ..... 29
- 전기공사업등록취소공고(제2004-153호) ..... 32
- 경상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공고(제2004-154호) ..... 35

|   |  |  |  |  |  |  |  |  |
|---|--|--|--|--|--|--|--|--|
| 회 |  |  |  |  |  |  |  |  |
| 람 |  |  |  |  |  |  |  |  |

발 행 : 경상북도 편 집 : 공보관실

|   |   |
|---|---|
| 시 | 군 |
|---|---|

## ■ 고 시

- 상주시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상주시고시제2004-193호) ..... 37
- 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봉화군고시제2004-6호) ..... 38
- 안동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및지형도면승인가고시(안동시고시제2004-14호) ..... 40
- 구미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고시(구미시고시제2004-28호) ..... 44
- 영주풍기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및지형도면고시(영주시고시제2004-156호) ..... 45

## ■ 공 고

- 도시계획사업시행공람공고(칠곡군공고제2004-76호) ..... 46
- 도시계획시설사업공사완료공고(포항시공고제2004-224호) ..... 48
- 용역사업집행계획및사업수행능력평가서자료제출안내공고(안동시공고제2004-118호) ..... 48
- 공인신조공고(경주시공고제2004-287호) ..... 51

|   |   |   |   |   |
|---|---|---|---|---|
| 시 | 군 | 소 | 방 | 서 |
|---|---|---|---|---|

## ■ 공 고

- 소방시설공사업신규등록업체공고(영천소방서공고제2004-1호) ..... 51
- 소방시설설계업폐업대상공고(구미소방서공고제2004-3호) ..... 52
- 소방공사감리업변경등록업체공고(경주소방서공고제2004-12호) ..... 53

|   |   |
|---|---|
| 기 | 타 |
|---|---|

## ■ 고 시

- 하천점용허가고시(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192호) ..... 54
- 하천점용허가고시(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193호) ..... 54

## ■ 공 고

- 도로사용개시에관한공고(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4-82호) ..... 55
- 공유재산(의회청사)매각입찰공고(인천광역시계양구공고제2004-127호) ..... 57

경 상 북 도

훈 령

경상북도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경 상 북 도 지 사

2004. 4. 19.

경상북도 훈령 제1183호

경상북도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와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기본지침에 의하여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소관 지리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지리정보를 생산·구축·관리·유통 및 활용하는 도와 직속 기관·사업소(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보안책임)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와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지리정보 및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그 보호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장 지리정보의 보안업무 관리체계

제4조 (지리정보보안담당관) ①지리정보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지리정보보안담당관을 둔다.

②지리정보보안담당관은 지리정보업무 주무국장이 되며, 임용과 동시에 지리정보에 관한 보안담당관이 된다.

제5조 (지리정보분임보안담당관)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리정보분임보안담당관

(이하 “분임담당관”이라 한다)이 된다.

1. 본 청 : 건설도시국 주택지적과장
2. 소속기관 : 지리정보업무 담당과장

②분임담당관이 공석중인 경우에는 차 하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지리정보보안담당관등의 임무) ①지리정보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리정보 보안업무의 계획 수립 및 시행
2. 지리정보의 생산·구축·관리·유통 및 활용에 따른 보완대책 강구
3. 지리정보의 보안관리를 위한 감사·지도·점검 및 교육
4. 지리정보의 보안진단 및 현황 조사
5. 기타 지리정보 관련 보안업무

②본청 분임담당관은 지리정보 보안업무에 관하여 소속기관의 분임담당관을 지휘·감독한다.

③분임담당관은 지리정보보안담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속부서내에서 제1항에서 정한 지리정보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7조 (지리정보보안담당관 등의 임명·교체) ①도지사는 지리정보보안담당관 및 분임담당관을 임명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국가정보원 대구지부장에게 통보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분임담당관을 임명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도지사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지리정보보안담당관이 교체될 때에는 소관 지리정보 보안업무 제반사항에 대하여 후임자와 인계·인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지리정보보안심의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지리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본청 보안심사위원회 산하에 지리정보보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9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도 보안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지리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분임담당관이 간사가 된다.

제10조 (위원회 임무·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리정보 보안업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비공개·공개제한 지리정보의 세부분류 기준
3. 비공개·공개제한 지리정보의 공개여부 및 공개활용에 따른 보안대책
4. 기타 지리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주요사항

②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의안심의 요구 및 처리절차) ①다음 각 호에 정한 자는 제10조의 심의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소관사항에 대한 의안을 작성, 위원회에 심의 요구하여야 한다.

1. 보안심의위원 및 간사
2. 각 실·과·사업소장

②위원회의 심의방법은 회의제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③심의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안을 심의 처리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회의 개최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심의결정서를 작성하여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서면심의시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 (의안의 확정 시행) ①위원회의 심의결정서를 통보 받은 심의요구자는 반드시 소속기관장의 재가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기관장은 ①항의 심의결과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재심의 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제3장 지리정보의 보호 및 관리

제13조 (지리정보의 분류) ①지리정보의 분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지리정보를 생산할 경우에는 제1항의 분류기준에 의하여 비공개, 공개제한, 공개로 분류하여야 한다.

③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지리정보가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이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제14조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지리정보의 취급) ①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는 그 지리정보와 업무상 관련이 있는 자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고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비공개 지리정보는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③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의 누설·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관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보관책임자 정 : 소관업무 담당과장(담당관)
2. 보관책임자 부 : 소관업무 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주사

제15조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보호) ①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훼손·파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책은 다음과 같다.

1.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보안관리책임자는 소관업무 담당과장(담당관)으로 지정
  2. 출입문 시건장치 설치 및 무단침입자의 방지
  3. 데이터베이스 복제(복사)본을 제작하여 철제용기 등에 별도로 보관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의 비치 및 기록유지
  4.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차단대책 강구
    - 가. 부서 및 사용자별 ID·비밀번호 부여, 자료유형(레이어)별 접근권한의 제한
    - 나. 작업 범위는 소관업무에 따라 열람·출력·갱신 등으로 제한
    - 다. 열람은 필요내용에 따라 기본항목·전 항목 등으로 구분
    - 라. 지리정보 취급자 이외에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허가를 받은 후 접근
  5. 비공개 및 공개제한 지리정보목록작성 및 관리대장 비치, 기록유지
  6. 해킹 등 불법접근 및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대책 강구
- ②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열람·전송·출력 등 사용내역 확인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관리한다.

제16조 (지리정보유통망 관리) 지리정보의 위·변조, 불법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리정보유통망 보호대책을 강구한다.

1. 보안관리 책임자 : 소관업무 담당과장(담당관)
2. 방화벽 등 침입 방지 및 감시시스템 설치·운용
3. 인터넷 등 외부망과 분리설치 및 해킹과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대책 강구
4. 지리정보 유통망에 대해서는 월1회 이상 점검·확인

제17조 (공개제한 지리정보의 활용) ①도지사와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정보에 대하여 공개제한 지리정보를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공개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확인·검토 후 제공할 수 있다.

1.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사항
2. 소속기관·단체 및 직책
3. 사용목적 및 타당성
4. 활용 후 관리대책

②분임담당관은 공개제한 지리정보를 제공한 때에는 제공일시, 자료의 내용 및 제공방법 등 관련사항을 공개제한 지리정보제공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 유지한다.

제18조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지리정보의 공개) ①도지사는 자체 및 소속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지리정보를 일반에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는 공개목적·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지리정보의 공개 필요성이 있는 경우 도지사와의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고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지리정보의 복제 등 제한) ①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지리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복제·복사 또는 출력할 수 없다.

1. 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복제·관리하는 경우

2. 비공개 지리정보는 관리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

3.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는 분임담당관의 허가를 받은 때

②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를 복제·복사 또는 출력한 때에는 그 원본과 동일하게 분류하고,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사본번호를 부여하고 예고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에 대한 복제·복사를 제한하고자하는 그 비밀(대외비)표지 또는 예고문 상단에 다음과 같이 붉은색으로 기입한다.

이 자료는 관리책임자의 허가없이 복제·복사할 수 없음

④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지리정보를 복제시에는 공개 지리정보와 구분하여 별도의 매체에 저장한다.

⑤지리정보를 복제·복사 또는 출력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지리정보 복제·출력 대장에 기록을 유지한다.

제20조 (지리정보의 국외반출 금지) ①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정부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의하여 상호 교환하는 경우

2.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거 지리정보를 국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속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①지리정보 및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위하여 전산실 등 필요한 장소는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관리한다.

②분임담당관은 보호구역의 관리책임자가 되고 관계직원 가운데 관리 부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보호구역의 출입통제에 대하여는 경상북도보안업무규정시행요강 제43조 및 제44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지리정보의 외주용역) ①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의 생산·구축·관리·유통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외주용역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분임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계약서 상에 지리정보 보호의무와 위반시 조치사항 명시
2.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
3.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
4. 용역 종료시 성과물과 제공된 각종 관련자료 회수 및 파기
5. 기타 보안관리상 필요한 사항

②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공개 지리정보를 제작하거나 인쇄·발간 또는 복제·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4조에 정한 비밀취급의 특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필요한 보안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지리정보를 외주용역 할 때에는 미리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파악,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 (외국인 보안관리) ①도지사는 외국인을 지리정보 관련업무에 종사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신원확인, 신상기록부 작성유지 및 보안교육·서약집행
2. 계약서에 기밀누설·유출시 해고 및 손해배상책임 명시
3. 비공개 등 중요지리정보 취급 및 핵심시설 출입 금지

②도지사는 외국인의 특이동향 등 보안상 위해로운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우선 지리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고 국정원장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지리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한 후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①지리정보의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은 별표 2와 같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자체실정에 맞는 지리정보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4장 지리정보 보안지도·감사·조사 및 교육

제25조 (보안지도 및 점검) ①도지사는 자체 및 소속기관의 지리정보 보안관리 실태를 확인,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보안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안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정기점검은 보안감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③보안지도 및 점검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미비점을 시정·보완토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6조 (보안감사) ①도지사는 정기보안감사에 지리정보 보안업무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안감사반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리정보 분임담당관 등 지리정보 및 전산보안분야 관계자를 포함하여 편성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전문요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 (보안교육) ①분임담당관은 본청 및 소속기관의 지리정보업무 취급자를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순회 또는 소집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신규채용·전입 및 퇴직자에 대해서는 사안 발생 때마다 분임담당관이 주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 (보안사고 발생시 조치)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사항은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기본지침 제20조 및 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장 보 칙

제29조 (보안관리규정) ①소속기관의 장은 지리정보 보안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기본지침 및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실정에 맞는 보안관리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②소속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미리 분임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0조 (준용) ①지리정보 이외의 항공사진, 위성영상 및 수치지도 등 지리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질정보에 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1.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기본지침
2.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3. 국가정보통신보안기본지침
4. 행정자치부 보안업무규정시행요강
5. 연도 보안업무 수행지침
6. 기타 지리정보 관련규정

##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등급별 지리정보의 분류기준(제13조 제1항 관련)

| 등급               | 분 류 기 준 |                                                                                                                                                                                                                                                                                                                                                                                                                                                         |
|------------------|---------|---------------------------------------------------------------------------------------------------------------------------------------------------------------------------------------------------------------------------------------------------------------------------------------------------------------------------------------------------------------------------------------------------------------------------------------------------------|
| 비<br>공<br>개      |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li> <li>○법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지리정보</li> </ul>                                                                                                                                                                                                                                                                                                                               |
|                  | 사례      | <p>〈항공사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이 포함된 사진</li> </ul> <p>〈위성영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상도에 관계없이 위치좌표(緯·經·高度)가 표시된 자료</li> </ul> <p>〈수치지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축척에 관계없이 국가보안목표 및 군사시설이 포함된 수치지도</li> </ul> <p>〈기타지리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상도에 관계없이 위치좌표가 포함된 3차원(입체) 영상자료</li> <li>○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의 속성자료가 포함된 지리정보</li> </ul>   |
| 공<br>개<br>제<br>한 |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리 정보</li> <li>○공개될 경우 개인의 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지리정보</li> <li>○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지리 정보</li> </ul>                                                                                                                                                                                                                                                                  |
|                  | 사례      | <p>〈항공사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공개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이 삭제된 지역사진</li> </ul> <p>〈위성영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상도에 관계없이 지리좌표(緯·經度)가 포함된 영상자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리좌표는 없으나 국가보안목표 중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시설과 군사시설이 노출된 해상도 6.6m 초과자료</li> </ul> <p>〈수치지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군사용 지도</li> <li>○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 기간시설이 포함된 수치지도</li> </ul> |

| 등급               | 분 류 기 준 |                                                                                                                                                                                                                                                                                                                                                                                                                                                                                                                                                                                                                                                                                                                                    |
|------------------|---------|------------------------------------------------------------------------------------------------------------------------------------------------------------------------------------------------------------------------------------------------------------------------------------------------------------------------------------------------------------------------------------------------------------------------------------------------------------------------------------------------------------------------------------------------------------------------------------------------------------------------------------------------------------------------------------------------------------------------------------|
| 공<br>개<br>제<br>한 | 사례      | <p>〈수치지도(계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지리정보체계기본계획에 의한 7대 지하시설물도</li> <li>○아래의 시설물이 표기된 1/1,000 이상 수치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력 : 발전소, 변전소, 지상송전선, 송전탑</li> <li>· 상수도 : 저수탑, 취수탑, 급수탑, 수문, 댐, 지상송수관, 지상용수관, 양배수장경계, 양배수장 기호</li> <li>· 가스관 : 지상가스관</li> <li>· 송유관 : 지상송유관, 저장소</li> <li>· 기타관 : 기타 수송관</li> <li>· 맨 홀 : 공동구맨홀, 송유맨홀, 가스맨홀, 전기맨홀, 통신맨홀, 전화맨홀, 기타맨홀(지형코드상의 기능이 미확인된 특정한 맨홀)</li> <li>· 특정건물 : 교도소, 구치소, 가스공사지사 등 통제기능이 가진 지사 및 공급관리소</li> </ul> </li> </ul> <p>〈기타지리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좌표는 없으나 국가보안목표 중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시설과 군사시설이 노출된 해상도 6.6m초과 3차원(입체)영상자료</li> <li>○국가기간시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중요 속성자료가 포함된 지리정보</li> </ul> |
|                  | 기준      | <p>○비공개 및 공개제한 지리정보 이외의 지리정보로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공개 또는 제공되는 지리정보</p>                                                                                                                                                                                                                                                                                                                                                                                                                                                                                                                                                                                                                                                                      |
| 공<br>개           | 사례      | <p>〈항공사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지역 항공사진<br/>(단, 일반에 제공 또는 판매시 인적사항 및 사진내용 기록유지)</li> </ul> <p>〈위성영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이 포함된 해상도 6.6m 이하 자료</li> <li>○좌표가 없는 일반지역 영상자료<br/>(단, 해상도 2m 이상 위성사진은 항공사진에 준해 관련기록 유지)</li> </ul>                                                                                                                                                                                                                                                                                                                                                                                                                            |

| 등급     | 분 류 기 준                                                                                                                                                                                                                                                                      |
|--------|------------------------------------------------------------------------------------------------------------------------------------------------------------------------------------------------------------------------------------------------------------------------------|
| 공<br>개 | <p>〈수치지도〉</p> <p>○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수치지도(좌표는 인터넷 표시불가)<br/>(단, 1/1,000 이상 수치지도를 일반에 제공시에는 인적사항 기록유지)</p> <p>〈기타 지리정보〉</p> <p>○좌표가 없는 일반지역 3차원(입체) 영상자료</p> <p>○국민편의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속성자료<br/>- 토양·지질도, 도시계획도, 도로건설계획도, 지번도, 전자해도 등</p> <p>○비공개 및 공개제한이 아닌 지리정보</p> |

※ 국가보안목표시설과 군사시설은 각각 국가정보원과 국방부가 정하는 바에 따름

[별표 2]

###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제24조 제1항 관련)

#### 1. 목 적

이 계획은 전시사변, 폭동,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경상북도가 보관·관리 및 활용하고 있는 공개제한 및 비공개 지리정보를 안전하게 지출 또는 파기함으로써 공개제한 및 비공개 지리정보 자료의 안전관리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2. 적용범위

경상북도가 생산·관리 및 활용하고 있는 지리정보

#### 3. 지출 또는 파기의 시기

- 가. 전쟁, 사변 또는 폭동의 발발로 인하여 지리정보 등을 현 보관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없게 된 때
- 나.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지리정보의 누설, 전파, 분실, 도난, 손실 또는 파괴의 우려가 있을 때
- 다. 적, 무장공비, 폭도, 기타 불순분자의 포위 공격 또는 침투로 지리정보 등을 탈취할 우려가 있을 때
- 라. 기타 현 보관장소에 계속 보관할 수 없는 불가피한 또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한 때

#### 4. 지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 등

- 가. 일과중일 때의 지출절차
  - 1) 상황파악 및 지출명령

분임담당관은 제3항의 상황에 의한 지출시기임이 파악되었을 때에는 즉시 도지사의 지출명령을 받아 보관책임자에게 공개제한 및 비공개 지리정보에 대한 지출을 명한다.

## 2) 보관 책임자의 지출조치

### 가) 지리정보 등 지출요원 소집 및 인출지시

지출요원은 보관 부책임자 및 그 소속직원이 된다.

### 나) 지리정보 등의 보관용기 개방과 인출작업

지출요원은 보관용기를 개방하여 지리정보 등을 인출한 후 이를 비상 반출낭에 넣어 반출준비를 완료한다.

### 다) 반출

지출요원은 승강기 또는 비상계단을 통하여 지리정보 등을 지출까지 가장 신속 하고도 안전한 방법으로 반출한다.

### 라) 반출시 호위

반출시 호위는 각 지출요원 또는 지명 받은 보조요원이 행한다.

## 나. 일과후 및 공휴일의 지출절차

### 1) 상황파악 및 지출명령

당직책임자는 제3항에 의한 지출시기임이 파악되었을 때에는 즉각 분임담당관에게 보고한 후 분임담당관의 명에 의하여 비밀 등에 대한 지출을 명한다.

### 2) 비상소집 조치(예비군 포함)

당직책임자는 판단된 상황에 따라 전 직원 또는 예비군에 대한 비상소집 조치를 취한다.

### 3) 지출조치

#### 가) 안전함 개방, 보관용기 열쇠 및 다이얼번호 등 확인

당직책임자는 당직실에 보관되어 있는 안전함을 열어 각 실·국과 보관용기 열쇠 및 다이얼번호를 확인한다.

#### 나) 인출조 편성 및 인출지시

당직책임자는 당직자(수위 포함)로 구성된 인원으로서 각 실·국과별로 분담한 인출조를 편성하여 해당되는 열쇠와 다이얼번호를 인계하여 인출토록 지시한다.

#### 다) 인출조의 인출작업

분담 받은 해당 실·국과의 지리정보 등 보관용기를 개방하여 지리정보 등을 인출한 후 이를 비상 반출낭에 넣어 반출준비를 완료한다.

#### 라) 반출

인출 또는 인출준비 완료와 동시에 비상계단을 통하여 지리정보 등을 지출지까지 가장 신속하고도 안전한 방법으로 반출한다.

마) 반출시 호위

반출시 호위는 우선 확보된 인출조원이 이를 하되, 비상소집 되어 도착된 예비군 또는 직원이 이를 호위한다.

다. 지출장소

- 1) 지출장소는 분임담당관이 이를 작성하여 안전함 내부에 비치한다.
- 2) 상황에 따라 분임담당관은 안전지출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라. 파기절차 및 장소

- 1) 적, 무장공비, 폭도 기타 불순분자의 포위공격 또는 침투로 인하여 지리정보 등의 안전지출이 도저히 불가능하거나 지리정보 등을 탈취할 진박한 상태가 야기되었을 때는 긴급 파기할 수 있다.
- 2) 파기절차는 지출절차 제4항 가호 및 나호에 준하여 시행하고, 파기장소는 소각장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의 진척에 따라 분임담당관의 판단에 의하여 별도의 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지리정보심의위원회 심의요구서(제11조 제1항 관련)

(의안번호 제      호)

|                |  |
|----------------|--|
| 제 목            |  |
| 회 부 근 거        |  |
| 회 부 기 관        |  |
| 주 요 내 용        |  |
| 요 구 자 의<br>의 건 |  |

첨부서류 :

위와 같이 지리정보심의위원회 심의를 요구합니다.

심의요구자 직위

성명

지리정보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지리정보심의위원회 심의결정서(제11조 제4항 관련)

(의안번호 제      호)

|         |     |
|---------|-----|
| 개 최 일 시 |     |
| 장 소     |     |
| 안 건     |     |
| 회 부 기 관 |     |
| 결 정 주 문 |     |
| 결 정 이 유 | 별 첨 |

위 주문과 같이 심의 결정함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 (인)

" (인)

" (인)

" (인)

" (인)

" (인)

" (인)

간 사 (인)

[별지 제3호서식]

## 지리정보심의위원회 회의록(갑)(제11조 제4항 관련)

- 일 시
- 장 소
- 참 석 자
- 안 건
- 회부기관

| 발 언 자 | 내 용 |
|-------|-----|
|       |     |

## 회 의 록(을)

| 발 언 자 | 내 용 |
|-------|-----|
|       |     |

[별지 제4호서식]

## 데이터베이스 복제(복사)본 관리대장(제15조 제1항 관련)

| 관리<br>번호 | 제작일자 | 제 목 | 형태 | 수량<br>(건) | 보호<br>보관 | 기간<br>장소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란에는 보호기간 경과자료의 처리결과 기재

[별지 제5호서식]

## 공개제한 지리정보 제공승인서(제17조 제1항 관련)

|               |      |  |        |  |
|---------------|------|--|--------|--|
| 요 청 자<br>신원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  |
|               | 소 속  |  | 직 책    |  |
| 요청자료          |      |  |        |  |
| 사용목적<br>활용계획  |      |  | 타당성    |  |
|               |      |  | 검 토 자  |  |
| 승인<br>사항      | 보안대책 |  |        |  |
|               | 제공자료 |  |        |  |
|               | 제공방법 |  |        |  |
|               | 제공일시 |  |        |  |

년 월 일

분임담당관 직책 직급 성명 (서명)

[별지 제6호서식]

## 공개제한지리정보제공관리대장(제17조 제2항 관련)

| 관리번호 | 제공일시 | 내용 | 방법 | 열람 · 수령자 |    | 제공사유 | 비고 |
|------|------|----|----|----------|----|------|----|
|      |      |    |    | 소속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공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제7호서식]

## 지리정보자료 복제·출력대장(제19조 제5항 관련)

| 일자 | 제 목 | 자료<br>구분 | 건수<br>(매수) | 출력자<br>(복제자) | 사 유 | 열람·수령자 |    | 예고문 | 승인관 |
|----|-----|----------|------------|--------------|-----|--------|----|-----|-----|
|    |     |          |            |              |     | 소속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구분란에는 “비공개” 또는 “공개 제한”으로 기재

# 고 시

경상북도 고시 제2004-81호

## 2004년도 골재채취예정지 지정 고시

골재채취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골재채취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4. 4. 19.

경 상 북 도 지 사

| 시군명 | 하천명 | 지구명  | 위 치                | 채취면적(㎡)   | 부존량(㎡)    |           |        | 예정지정 고시량(㎡) |           |        | 지정기간(고시일로부터) |
|-----|-----|------|--------------------|-----------|-----------|-----------|--------|-------------|-----------|--------|--------------|
|     |     |      |                    |           | 계         | 세골재       | 굵은골재   | 계           | 세골재       | 굵은골재   |              |
| 계   |     | 6    |                    | 1,535,200 | 2,159,000 | 2,129,000 | 30,000 | 2,159,000   | 2,129,000 | 30,000 |              |
| 철곡군 | 낙동강 | 금남지구 | 왜관읍 금남리<br>693번 지선 | 350,000   | 320,000   | 315,000   | 5,000  | 320,000     | 315,000   | 5,000  | 1년           |

| 시군명 | 하천명 | 지구명  | 위 치                   | 채취면적(㎡) | 부존량(㎡)  |         |       | 예정지정 고시량(㎡) |         |       | 지정기간고시일로부터 |
|-----|-----|------|-----------------------|---------|---------|---------|-------|-------------|---------|-------|------------|
|     |     |      |                       |         | 계       | 세골재     | 굵은골재  | 계           | 세골재     | 굵은골재  |            |
| 칠곡군 | 낙동강 | 낙산지구 | 왜관읍 낙산리<br>851-59번 지선 | 162,000 | 349,000 | 344,000 | 5,000 | 349,000     | 344,000 | 5,000 | 1년         |
|     | 낙동강 | 기산지구 | 기산면 노석리<br>211번 지선    | 303,000 | 390,000 | 385,000 | 5,000 | 390,000     | 385,000 | 5,000 | 1년         |
|     | 낙동강 | 포남지구 | 석적면 포남리<br>1688-1번 지선 | 206,800 | 300,000 | 295,000 | 5,000 | 300,000     | 295,000 | 5,000 | 1년         |
|     | 낙동강 | 석적지구 | 석적면 포남리<br>1497번 지선   | 273,400 | 400,000 | 395,000 | 5,000 | 400,000     | 395,000 | 5,000 | 1년         |
|     | 낙동강 | 남울지구 | 석적면 남울리<br>845번 지선    | 240,000 | 400,000 | 395,000 | 5,000 | 400,000     | 395,000 | 5,000 | 1년         |

경상북도 고시 제2004-82호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 4. 19.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업명칭 : 김천 미진 동아루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2.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미진종합건설(주) 대표 김종탁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30-58번지

3. 사업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응명동 산 36번지 일원

4. 사업개요

| 사업종류       | 사 업 내 용                                                                         | 사 업 비        | 비 고 |
|------------|---------------------------------------------------------------------------------|--------------|-----|
| 분 양<br>주 택 | · 대지 면적 : 20,477.0㎡<br>· 건축연면적 : 59,165.1404㎡<br>· 건설 규모 :<br>- 14~19층 5동 462세대 | 39,381,707천원 |     |

5. 사업기간 : 2004. 4. ~ 2007. 2.

6. 다른 법률의 의제

건축법 제8조, 제15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제86조, 제88조, 농지법 제36조,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수도법 제12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 제9조 제2항, 제10조 제2항, 하수도법 제13조

7. 관계서류 사본은 김천시청 도시주택과 및 미진종합건설(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경상북도 고시 제2004-83호

## 사방지정 변경 고시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사방지정지를 변경고시 합니다.

2004. 4. 19.

경 상 북 도 지 사

### 1. 사방지정 변경명세서

| 소 재 지 |    |    | 지번<br>(필) | 지목 | 지적면적(㎡) |           | 지정면적(㎡) |       | 소유자 주소 성명 |     |         |     | 비고   |
|-------|----|----|-----------|----|---------|-----------|---------|-------|-----------|-----|---------|-----|------|
| 시군    | 읍면 | 리동 |           |    | 당초      | 변 경       | 당초      | 변경    | 시군        | 읍면  | 리동      | 성명  |      |
| 1     | 1  | 1  |           | 1필 | 48,379  | 1,383,769 | 1,500   | 1,500 |           |     |         |     |      |
| 봉화    | 봉화 | 적덕 | 산91       | 임야 | 48,379  |           | 1,500   |       | 서울        | 송파구 | 가락동 13  | 강희정 | 산지사방 |
| "     | 명호 | 관창 | 산60-2     | "  |         | 1,383,769 |         | 1,500 | 봉화        | 봉화  | 내성리 285 | 봉화군 | "    |

## 2. 금지사항

- 가. 죽목의 벌채, 토석·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나. 토지의 형질변경  
 다. 기타 사방시설의 훼손·변경

경상북도 고시 제2004-84호

## 사방지 지정 고시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사방지를 지정고시 합니다.

2004. 4. 19.  
 경 상 북 도 지 사

## 1. 사방지 지정 위치

- 가. 붙임 사방지 지정명세서

## 2. 금지사항

- 가. 죽목의 벌채, 토석·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나. 토지의 형질변경  
 다. 기타 사방시설의 훼손·변경

## 사방지 지정 명세서

| 소재지 |    |    | 지번<br>(필) | 지목 | 지적면적<br>(㎡) | 지정면적<br>(㎡) | 소유자 또는 점유자 주소 성명 |        | 비고   |
|-----|----|----|-----------|----|-------------|-------------|------------------|--------|------|
| 시군  | 읍면 | 리동 |           |    |             |             | 주 소              | 성 명    |      |
| 합계  | 3  | 3  | 7필        |    | 93,198      | 20,000      |                  |        |      |
| 소계  | 1  | 1  | 4         |    | 71,829      | 10,000      |                  |        |      |
| 경주  | 양북 | 용당 | 산11       | 임야 | 59,729      | 8,500       | 경주 양북 용당 436     | 차녕호    | 예방사방 |
| "   | "  | "  | 산13       | "  | 10,711      | 304         | 경주 양북 용당 449     | 차원철    | "    |
| "   | "  | "  | 산86       | "  | 496         | 496         | 경주 양북 전촌 953     | 최상하    | "    |
| "   | "  | "  | 산185      | "  | 893         | 700         |                  | 건설부    | "    |
| 소계  | 2  | 2  | 3         |    | 21,369      | 10,000      |                  |        |      |
| 청도  | 화양 | 신봉 | 산62-15    | 임야 | 16,309      | 6,500       | 청도 화양 신봉 338     | 이삼수의 7 | 예방사방 |
| "   | 금천 | 박곡 | 산136-7    | "  | 3,374       | 2,500       | 경산 경산 중방 353-40  | 송용호    | "    |
| "   | "  | "  | 산136-8    | "  | 1,686       | 1,000       | 경산 경산 중방 353-40  | 송용호    | "    |

경상북도 고시 제2004-85호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 4. 19.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업명칭 : 포항 대우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2.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대우주택 대표 김태구

나. 주 소 : 포항시 남구 연일읍 생지리 376-1번지

3. 사업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85-1번지 일원

4. 사업개요

| 사업종류       | 사 업 내 용                                                                        | 사 업 비        | 비 고 |
|------------|--------------------------------------------------------------------------------|--------------|-----|
| 분 양<br>주 택 | · 대지 면적 : 8,950.0㎡<br>· 건축연면적 : 20,070.4206㎡<br>· 건설 규모 :<br>- 12~15층 2동 199세대 | 18,045,000천원 |     |

5. 사업기간 : 2004. 4. ~ 2006. 3.

6. 다른 법률의 의제

건축법 제8조, 제15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제86조, 제88조, 농지법 제36조, 수도법 제12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 제10조 제2항, 하수도법 제13조

7. 관계서류 사본은 포항시청 주택과 및 (주)대우주택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 공 고

경상북도 공고 제2004-143호

##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04. 4. 19.

경 상 북 도 지 사

문서번호 : 도시계획과 -

수 신 : 삼부종합토건(주) 임진선

제 목 : 일반건설업 등록말소 알림

1. 귀 사는 건설업등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처분내역

| 상 호<br>(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업종 및<br>등록번호    | 소 재 지                | 처분내용<br>(처분일)         | 처분사유        | 근 거                  |
|---------------------------|-----|-----------------|----------------------|-----------------------|-------------|----------------------|
| 삼부종합토건(주)<br>110111-***** | 임진선 | 토목건축<br>17-0001 | 포항시 북구 용흥동<br>377-10 | 등록말소<br>(2004. 4. 13) | 사업자등록<br>폐업 | 건설산업기본법<br>제83조 제11호 |

2. 아울러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우리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상북도 공고 제2004-144호

『2004 세계일류 중소기업 지정 · 육성 계획』 공고

글로벌 경쟁시대에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성장 잠재력과 기술경쟁력이 큰 지역 유망중소기업 발굴을 위한 『2004 세계일류 중소기업』 지정·육성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4. 19.

## 경 상 북 도 지 사

1. 선정업체수 : 도내 10개 중소기업체

2. 추천대상

경북도내에 공장(법인은 사무실포함)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종에 등록된 유망 중소기업

3. 추천 및 접수기간

가. 추천권자 : 시장·군수, 지방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지원센터이사장, 중진공지역본부장, 한국표준협회지부장, 지역상공회의소회장 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경영자총협회장 등

※ 중소기업 대표자가 道에 직접 신청가능

나. 추천기간 : 2004. 4. 10 ~ 4. 30(21일간)

다. 접 수 처 : 경상북도 기업노동과(☎053-950-3242)

(우702-702) 대구시 북구 산격동 1445-3

라. 첨부서류 : 업체 심사제출서류 및 추천기관 공적요약서 : 별첨<신청서식 및 제출양식은 도청 홈페이지 (<http://www.gb.go.kr>) 알림마당 또는 경제통상실-주요시책에서 다운받아 활용>

4. 선정기준

가. 기업의 경영(건실도)이 양호하고 성장가능성이 있는 업체

나. 제품생산성·매출 등에서 높은 성장율을 보이고 수출 유망제품을 생산 국민경제에 기여도가 큰 업체

다. 첨단기술 또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체

라. 중소기업 R&D 투자활성화, 국제품질인증획득, 품질혁신 등 제품 및 기술개발에 주력하는 업체

※ 제외 대상

- 연간매출액 20억원 미만, 부채비율 300% 이상 업체
- 2002년 이후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을 수상한 업체

## 5. 심사방법

가. 서류 및 현지심사 : 심사기준 및 심사표에 의거 서류 및 현장심사

나. 종합심사 : 1차 심사(서류 및 현지심사)내용을 토대로 심사 위원회에서 최종선정

※ 최종심사는 별도 심사위원를 구성하여 심사

## 6. 지원혜택

가. 시상금 지급 및 지정서(현판) 수여

나. 국세청, 관세청, 금융기관, KOTRA 등 지원기관 우선 육성

- 세제·금융 등 각종 지원혜택 부여
- 중소기업 구조조정·운영자금 및 수출보증보험 수혜자로 우선선정

다. 해외시장개척단 우선 파견 및 인터넷을 통한 제품홍보

라. 국제품질인증획득, 전문기술컨설팅, 산·학·연공동기술 개발 등

## 7. 시상 및 지정서 수여

가. 일 시 : 2004. 6월말 예정

나. 시상내용 : 지정서, 현판 및 시상금 수여

(시상식 세부계획은 지정업체 선정후 별도 통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道 기업노동과(☎054-950-3242 담당 김영섭)로 문의

(별지 제1호 서식)

## 「세계일류중소기업」 대상업체 추천(신청)서

|                                                                                                                             |                     |     |                            |                        |          |                                    |  |  |  |  |  |
|-----------------------------------------------------------------------------------------------------------------------------|---------------------|-----|----------------------------|------------------------|----------|------------------------------------|--|--|--|--|--|
| 업 체 명                                                                                                                       |                     |     | 대표자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소 재 지                                                                                                                       | 본사)                 |     |                            | 전화<br>번호               | ☎<br>FAX |                                    |  |  |  |  |  |
|                                                                                                                             | 공장)                 |     |                            |                        |          |                                    |  |  |  |  |  |
| 사업자등록<br>번호                                                                                                                 |                     |     | 설립년월일                      |                        |          | 산업분류                               |  |  |  |  |  |
| 홈페이지                                                                                                                        |                     |     |                            | E-mail<br>(담당자)        |          |                                    |  |  |  |  |  |
| 회사규모                                                                                                                        | 대지 m <sup>3</sup>   |     | 주생산품                       |                        |          |                                    |  |  |  |  |  |
|                                                                                                                             | 건축면적 m <sup>3</sup> |     |                            |                        |          |                                    |  |  |  |  |  |
| 매 출 액<br>(2003년)                                                                                                            | 총 매 출 액             | 백만원 |                            | 02년                    | 매출액      |                                    |  |  |  |  |  |
|                                                                                                                             | 수 출 액               | 백만원 |                            | 실적                     | 수출액      |                                    |  |  |  |  |  |
|                                                                                                                             | 수출액/총매출액×100        | %   |                            | 주요수주처                  |          |                                    |  |  |  |  |  |
| 국제품질<br>인증                                                                                                                  | ISO, CE, UL 등       |     |                            | 벤치기업<br>우수제품<br>(기술)인증 |          | 벤처, EM, GQ, NT, KT 등               |  |  |  |  |  |
| 종업원 현황                                                                                                                      | · 총인원 ( 명)          |     | 산업재산권, 여성기업<br>장애인기업, 각종포상 |                        |          | 실용실안, 특허, 기관포상 등<br><br>(해당업체만 기재) |  |  |  |  |  |
|                                                                                                                             | · 관리직 ( 명)          |     |                            |                        |          |                                    |  |  |  |  |  |
|                                                                                                                             | · 생산직 ( 명)          |     |                            |                        |          |                                    |  |  |  |  |  |
| 핵심기술내용<br>및 특이사항                                                                                                            | ※ 핵심기술력, 경쟁력        |     |                            |                        |          |                                    |  |  |  |  |  |
| 위 업체를 2004년도 세계일류중소기업 육성지원 대상업체로 추천(신청)합니다.<br>2004년 월 일<br>추천기관) (인)<br>신청업체) (인)<br>경상북도지사 귀하                             |                     |     |                            |                        |          |                                    |  |  |  |  |  |
| ※ 첨부서류 : 업체 심사제출서류 및 추천기관 공적요약서 : 별첨<br><신청서식 및 제출양식은 도청 홈페이지 (http://www.gyeongbuk.go.kr) 알림마당<br>또는 경제통상실 - 주요시책 다운받아 활용> |                     |     |                            |                        |          |                                    |  |  |  |  |  |

☎ 접 수 처 : 경북도청 기업노동과 (담당 김영섭) ☎053-950-3242

추천업체 주요공적 및 요약서

○ 추천사유(특기사항)      ○ 주요공적 내용

○ 기술수준(제품), 경쟁력 정도

### 〈 세계일류중소 기업 업체심사 제출서류〉

세계일류중소기업 추천기관(업체)에서는 아래 준비자료를 첨부하여 2004. 4. 30일 까지 道 기업노동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道 기업노동과 김영섭(☎054-950-3242)

※ 업체심사중 주요실적 및 현안사항은 제출서류에 한함

| 항 목      | 제 출 서 류                                                          | 비 고                      |
|----------|------------------------------------------------------------------|--------------------------|
| 일반<br>사항 | ① 추천서, 신청서 1부                                                    |                          |
|          | ②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
|          | ③ 업체홍보 및 생산제품 설명 1식                                              | 업체 특이사항 포함               |
| 경영       | ④ 2002, 2003년 결산재무제표<br>(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 계산서 등)               | (2년간)                    |
|          | ⑤ 종업원 교육 및 연수실적                                                  | 최근1년간                    |
| 기술<br>자료 | ⑥ 2003년 수출증빙서류                                                   | 금융기관 수출증빙자료              |
|          | ⑦ 신기술 개발실적(최근2년간)                                                |                          |
|          | ⑧ 산업재산권보유 현황                                                     | 특허, 실용실안, 의장 등           |
|          | ⑨ 해외시장 개척실적<br>(현지공장, 해외사무소, 개척활동 자료)                            |                          |
|          | ⑩ 국내외 품질관련 증명자료<br>(ISO, QS, KS, CE, UL, 100PPM, SIG SIGMA 추진 등) | 현보유 인증사항                 |
|          | ⑪ 산학연 컨소시엄, 기술지도, RRC<br>공동기술개발 등 (2년간실적)                        | 기술개발추진 상황                |
|          | ⑫ 해외기술도입 또는 기술수출 실적                                              | 최근 2년간                   |
|          | ⑬ 벤처기업, 우수제품(기술)인증<br>(EM, NT, GQ, KT 등)                         | 중기청, 국가기관 등<br>우수제품 인증품목 |
|          | ⑭ 행정기관 포상 실적                                                     | 최근 3년간                   |
| 기타       | ⑮ 여성전문경영인, 장애인고용 증명자료                                            |                          |

※ 추천기관에서는 업체관련 제출서류를 확인후 道에 제출요망

경상북도 공고 제2004-150호

## 경상북도의회 부의안건 공고

경상북도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4. 19.

경 상 북 도 지 사

### 【부의안건】

1.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산림과학박물관입장료징수및관리조례안
5.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설립에관한건

### 【주요골자】

1.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가. 제안이유

- 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에 따라 설치 승인된 의성소방서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소방서 설치 및 관할구역 조정
  - 명 칭: 의성소방서
  - 위 치: 경북 의성군 봉양면 구미리 700-3
  - 관할구역: 군위군, 의성군 일원
- ※ 종전: 군위군-구미소방서, 의성군-안동소방서 관할

2.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가. 제안이유

- 의성소방서 및 소방파출소 신설, 구조·구급대 보강 등에 따른 소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 3,685명 → 3,796명(증111명)
  - 소방공무원의 정원 : 1,814명 → 1,925명
- 증원내역(111명)
  - 소방정1, 소방경5, 소방위9, 소방장21, 소방교33, 소방사42
- 소방관서별
  - 의성소방서 신설(119구조대 포함) 35명
    - 포항소방서(영해파출소 신설, 구조구급대 보강 등) 22명
    - 김천소방서(아포파출소 신설) 11명
    - 영주소방서(문수파출소 신설, 구급대 보강) 17명
    - 경산소방서(119구조대, 구조구급인력 보강) 11명
    - 경주소방서 외 4개 소방서(구조구급인력 등 보강) 15명

## 3.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가. 제안이유

-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법률 제6916호 - '03. 5. 29)되어 '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 국가사무이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승인취소, 착공신고처리 및 감리자지정』 사무가 시·도지사 권한으로 변경되어 규칙으로 재위임하던 것을 조례로 위임하고자 함.
- 시·도지사의 권한이던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행위허가 및 신고수리』 사무가 시장·군수 권한으로 변경되어 조례로 권한위임하던 것을 삭제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승인취소, 감리자지정, 착공신고서 수리 등의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
  - 500세대 미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승인취소 및 착공신고서 수리
  - 감리자 지정·보고, 감리자교체, 감리업무 지정제한 등
-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행위허가 및 신고수리』 사무가 시장·군수 권한사무로 변경되어 위임사무 삭제

## 4. 경상북도산림과학박물관입장료징수및관리조례안

## 가. 제안이유

- 산림사료의 연구적 보존과 학술연구를 통한 산림문화 창달 및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립한 산림과학박물관의 입장료 징수 및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해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함.

## 나. 주요내용

- 박물관의 휴관일은 1월 1일, 설날, 중추절, 매주 월요일, 박물관의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 전시관의 입장료는 어린이(7세 이상 12세 이하) 1,000원(단체 500원), 청소년(13세 이상 18세 이하) 1,500원(단체 1,000), 일반(19세 이상) 2,000원(단체 1,500원)으로 함.

※ 단체는 30인 이상 기준임.

## ○ 입장료의 면제대상

- 국민과 외국사절단 및 수행자, 공무 수행 출입자, 6세 이하의 자 및 65세 이상인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군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위촉된 명예 산림보호지도요원, 어린이날 입장하는 어린이

-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매점, 기념품 판매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수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5.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설립에관한건

## 가. 제안이유

- 지역특화산업으로 안동에 건축중인 『경북생물건강산업사업화지원센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우리 도 북부지역을 바이오산업의 집적지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경상북도첨단산업진흥을위한재단법인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 제18조 규정에 의거 도의회 의결을 거쳐 재단법인을 설립코자 함

## 나. 주요내용

- 법인의 명칭 :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 안동의 생물건강산업과 경북의 바이오 관련산업 발전을 위하여 대중성과 지명도를 갖춘 명칭을 사용함

## ○ 법인의 사업

- 경북생물건강산업사업화지원센터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기술보급, 창업보육 등

경상북도 공고 제2004-153호

## 전기공사업등록 취소 공고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부칙③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1'의 규정에 의거 전기공사업등록 기준이 미달된 다음 업체에 대하여 전기공사업등록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다 음  
“붙임 내역 참조”

2004. 4. 19.  
경 상 북 도 지 사

## 전기공사업등록 취소 업체

| 등록번호    | 상 호     | 대표자 | 소 재 지                 |
|---------|---------|-----|-----------------------|
| 경기-1425 | 한창산전(주) | 안정선 |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 128-3  |
| 경북-119  | 신도전기(주) | 최명욱 | 포항시 북구 장성동 장성동 66B 2L |
| 경북-122  | (주)우창기전 | 박학출 | 포항시 남구 상도동 635-19     |
| 경북-185  | (주)한동기업 | 안승웅 | 포항시 북구 환호동 496-7      |
| 경북-202  | (주)신화건설 | 장병호 |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 578-3     |
| 경북-227  | 제일토건(주) | 권순철 | 안동시 수상동 379           |

| 등록번호   | 상 호       | 대표자 | 소 재 지                       |
|--------|-----------|-----|-----------------------------|
| 경북-237 | 대명전업사     | 지명식 |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618-13          |
| 경북-251 | (합)태영전기공사 | 최기란 |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 771             |
| 경북-269 | 영풍전업사     | 이준호 | 고령군 고령읍 현문리 311             |
| 경북-272 | (주)광진계전   | 김경원 | 포항시 남구 두호동 506              |
| 경북-287 | 아주기업      | 정태현 | 포항시 북구 용흥1동 377-10          |
| 경북-305 | 기전사       | 공기웅 | 포항시 남구 송도동 481-5            |
| 경북-311 | 진영계전(주)   | 장영호 | 포항시 남구 대도동 53-10            |
| 경북-319 | 거진전력      | 배동호 | 김천시 부곡동 395-7               |
| 경북-321 | 송현전기공사    | 손진로 | 영천시 완산동 1092-1              |
| 경북-353 | 태광전기공사    | 천상필 | 안동시 태화동 187-23              |
| 경북-359 | 제일전기      | 이기식 | 의성군 금성면 탑리3리 655-3          |
| 경북-365 | 대도전기      | 박화명 | 구미시 원평동 1022-8              |
| 경북-378 | 상명전기통신    | 이상춘 | 구미시 송정동 473-4               |
| 경북-383 | (합)고려전력   | 송상호 | 포항시 북구 득량동 155-4 포항온천프라자 2층 |
| 경북-385 | 경포산업(주)   | 정석윤 | 포항시 남구 대잠동 950-7            |
| 경북-386 | 영광설비전기공사  | 이정표 | 영주시 영주동 547 중앙시장 62호        |
| 경북-412 | (합)현대전기   | 김관중 | 문경시 모전동 873-4               |
| 경북-437 | 현대전기공사    | 유재숙 | 의성군 의성읍 도동리 921-6           |
| 경북-444 | 세일전기      | 임대희 |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420-2           |
| 경북-474 | 대성전기      | 전병준 | 상주시 공성면 옥산리 183-6           |
| 경북-489 | (주)서울전기   | 강금옥 |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 306-1           |
| 경북-504 | 아성기업      | 김석학 | 포항시 북구 죽도1동 32-19           |

| 등록번호   | 상 호          | 대표자 | 소 재 지                      |
|--------|--------------|-----|----------------------------|
| 경북-530 | 대우전기         | 박봉환 | 안동시 명륜동 328-4              |
| 경북-555 | (주)부광전기      | 주병곤 | 영천시 문외동 50-2               |
| 경북-603 | 대영콘트롤스       | 김대영 | 포항시 남구 상도동 666-22          |
| 경북-616 | 우왕종합전기       | 이균재 | 구미시 임수동 92-586             |
| 경북-621 | 일성산업(합)      | 이권석 | 칠곡군 왜관읍 삼청리 534            |
| 경북-644 | (주)동건기전      | 김종호 | 포항시 남구 대잠동 950-16          |
| 경북-687 | (주)동영산업      | 이승준 | 포항시 남구 해도2동 125-22         |
| 경북-705 | (합)대성전설      | 김채만 | 구미시 임수동 92-6 공구상가 5동 20호   |
| 경북-715 | 백제전기         | 권영식 | 문경시 흥덕동 358-4              |
| 경북-730 | 세계전기조명       | 정대호 | 봉화군 봉화읍 포저리 220-4          |
| 경북-737 | (주)서광계전      | 김영수 | 포항시 남구 대잠동 924-4           |
| 경북-746 | (주)락명전기      | 송세미 | 안동시 옥동 638-1 삼성아파트 상가동 21호 |
| 경북-751 | (주)이 아이 씨    | 조명행 | 포항시 남구 장흥동 1873            |
| 경북-759 | 대림전기         | 최대림 | 상주시 성동동 193-2              |
| 경북-760 | 영우기전         | 이용우 |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만산리 253-1       |
| 경북-768 | (주)한동전기      | 장노익 | 경주시 황남동 97-4               |
| 경북-801 | 케이.엠엔지니어링(주) | 윤영일 | 포항시 남구 상도동 603-4           |
| 경북-803 | (주)대한전기      | 정장우 | 상주시 신봉동 270                |
| 경북-825 | (주)신동광기업     | 김동규 | 포항시 남구 해도동 33-65           |
| 경북-828 | 팔도전기         | 강경석 | 안동시 안기동 119-4              |
| 경북-833 | 구구전기         | 구본정 |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565            |
| 경북-834 | 금오전기         | 이재승 | 포항시 남구 상도동 18-216          |
| 경북-841 | 울릉제일전기       | 박향미 |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571-31         |
| 경북-876 | (주)미광전설      | 안순애 | 상주시 무양동 287                |

| 등록번호    | 상 호          | 대표자 | 소 재 지                |
|---------|--------------|-----|----------------------|
| 경북-878  | 동국전설         | 이성균 | 구미시 형곡동 117-1        |
| 경북-887  | (주)오성엔지니어링   | 김범석 | 포항시 남구 대송면 지제내리 231  |
| 경북-893  | (주)대일주택건설    | 조대영 | 안동시 법흥동 68-8         |
| 경북-897  | 신호안전         | 조승욱 | 의성군 보양면 화전1리 1137-22 |
| 경북-927  | 한국전기         | 안종익 | 경주시 노서동 60-3         |
| 경북-953  | (주)칠번전력      | 구영서 | 경산시 자인면 동부리 141-7    |
| 경북-965  | (주)두리전기      | 정성찬 |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204-129  |
| 경북-1005 | 광명전기(주)      | 박경선 | 영천시 야사동 333-27       |
| 서울-2189 | (주)덕산종합엔지니어링 | 김현우 | 포항시 남구 해도동 1-324     |

경상북도 공고 제2004-154호

## 경상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경상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4. 19.

경 상 북 도 지 사

### 1. 개정이유

가. 도로법 제44조(점용료징수의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5(점용료의 감면) 규정에 의거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해서도 점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유지와 동일지역에서는 국도와 같은 점용료를 부과·징수함으로써 법적형평성을 기하고, 도로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나.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3(점용료의 부과·징수) 제3항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규정에 따라 지방도와 국가지원지방도 점용료 부과시 5천원 미만은 부과하지 않음으로서 점용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소액 부정수 신설(안 제3조의3)

-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징수하지 않음.

나. 점용료의 감면 신설(안 제4조의2)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안 제4조의2 제1호)
-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안 제4조의2 제2호)
-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안 제4조의2 제3호)
-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안 제4조의2 제4호)

##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5월 12일까지 경상북도지사(참조 : 도로과장,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5-3번지, 우편번호 : 702-702, ☎053-950-2209, 팩스 053-950-3629, E-mail : yoon4997@g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시 군

## 고 시

상주시 고시 제2004-193호

## 고 시

상주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상주세무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 4. 19.

상 주 시 장

## 1. 사업내용

| 위 치                   | 종 류 및 명 칭       | 면 적 및 규 모                                               |
|-----------------------|-----------------|---------------------------------------------------------|
| 상주시 만산동<br>599-2번지 일원 | 공공청사<br>(상주세무서) | 대지면적 : 8,815.00㎡<br>건축면적 : 832.45㎡<br>연 면 적 : 2,374.97㎡ |

2. 시행자 주 소 : 상주시 성하동 13-1번지

성 명 : 상주세무서장

3. 사업시행기간 : 인가일로부터 2005년 6월까지

4. 관계 편입토지조서 및 도서 등은 상주시청 도시과(☎054-530-634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봉화군 고시 제2004-6호

##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고시

지난 2002년 4월 18일자로 인가·고시된 군계획시설사업(대로3류1호선)시행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관계서류를 봉화군청 지역개발과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2004. 4. 19.

봉 화 군 수

## 1. 사업내용

가. 사업 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봉화읍 내성리 124-14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대로3-1호선 개설공사

다.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 폭원 22m 연장 300m 면적 9,486㎡

라.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부산시 동구 전진길 46번.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마. 사업의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 2004년 4월 변경 : 2004년 12월

## 2.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건 조서(편입토지조서) : 변경없음

가. 편입토지

| 일련<br>번호 | 토지의 소재 |     |       | 지<br>목 | 지적<br>(㎡) | 편입예정<br>면적(㎡) | 소<br>유<br>자 | 비고 |
|----------|--------|-----|-------|--------|-----------|---------------|-------------|----|
|          | 읍면     | 리   | 지번    |        |           |               |             |    |
| 1        | 봉화읍    | 포저리 | 123-1 | 도      | 20        | 20            | 경상북도        |    |
| 2        | 봉화읍    | 포저리 | 123-2 | 도      | 618       | 618           | 경상북도        |    |
| 3        | 봉화읍    | 포저리 | 123-4 | 도      | 30        | 30            | 경상북도        |    |
| 4        | 봉화읍    | 포저리 | 123-7 | 도      | 327       | 200           | 경상북도        |    |
| 5        | 봉화읍    | 포저리 | 123-8 | 도      | 345       | 345           | 경상북도        |    |

| 일련<br>번호 | 토지의 소재 |     |        | 지<br>목 | 지적<br>(㎡) | 편입예정<br>면적(㎡) | 소<br>유<br>자                  | 비고  |
|----------|--------|-----|--------|--------|-----------|---------------|------------------------------|-----|
|          | 읍면     | 리   | 지번     |        |           |               |                              |     |
| 6        | 봉화읍    | 포저리 | 123-14 | 잡      | 231       | 231           | 봉화읍 포저리 123-3 삼영레미콘주식회사      |     |
| 7        | 봉화읍    | 포저리 | 124-1  | 도      | 63        | 63            | 경상북도                         |     |
| 8        | 봉화읍    | 포저리 | 124-2  | 도      | 165       | 165           | 경상북도                         |     |
| 9        | 봉화읍    | 포저리 | 124-4  | 도      | 394       | 394           | 경상북도                         |     |
| 10       | 봉화읍    | 포저리 | 124-5  | 답      | 28        | 28            | 봉화읍 포저리 123(주)삼영             | 근저당 |
|          |        |     |        |        |           |               |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50 중소기업은행(영주지점) |     |
| 11       | 봉화읍    | 포저리 | 137-1  | 전      | 81        | 81            | (국)건설교통부                     |     |
| 12       | 봉화읍    | 포저리 | 138-1  | 도      | 476       | 476           | (국)건설교통부                     |     |
| 13       | 봉화읍    | 포저리 | 138-3  | 도      | 236       | 116           | 경상북도                         |     |
| 14       | 봉화읍    | 포저리 | 138-4  | 답      | 10        | 10            | (국)건설교통부                     |     |
| 15       | 봉화읍    | 포저리 | 139-2  | 도      | 873       | 697           | (국)건설교통부                     |     |
| 16       | 봉화읍    | 포저리 | 139-4  | 도      | 995       | 995           | 경상북도                         |     |
| 17       | 봉화읍    | 포저리 | 139-5  | 답      | 863       | 863           | (국)건설교통부                     |     |
| 18       | 봉화읍    | 포저리 | 140-2  | 도      | 93        | 8             | 경상북도                         |     |
| 19       | 봉화읍    | 포저리 | 140-3  | 도      | 197       | 51            | 경상북도                         |     |
| 20       | 봉화읍    | 포저리 | 144-2  | 도      | 638       | 126           | (국)건설교통부                     |     |
| 21       | 봉화읍    | 포저리 | 144-3  | 도      | 20        | 20            | 경상북도                         |     |
| 22       | 봉화읍    | 포저리 | 144-5  | 대      | 85        | 85            | (국)건설교통부                     |     |
| 23       | 봉화읍    | 포저리 | 147-7  | 도      | 259       | 120           | 경상북도                         |     |
| 24       | 봉화읍    | 포저리 | 504    | 구      | 3,332     | 337           | 국(농림부)                       |     |
| 25       | 봉화읍    | 포저리 | 523    | 구      | 2,334     | 84            | 국(농림부)                       |     |
| 26       | 봉화읍    | 포저리 | 산29-3  | 도      | 1,091     | 411           | 경상북도                         |     |
| 27       | 봉화읍    | 포저리 | 산26-10 | 도      | 360       | 360           | 경상북도                         |     |
| 28       | 봉화읍    | 포저리 | 산26-12 | 임      | 1,936     | 1,936         | (국)건설교통부                     |     |
| 29       | 봉화읍    | 포저리 | 산26-13 | 임      | 528       | 528           | (국)건설교통부                     |     |
| 30       | 봉화읍    | 포저리 | 산40    | 임      | 73,129    | 88            | 봉화군                          |     |

## 나. 지장물조서

| 일련<br>번호 | 물 건 소 재 지 |    |        | 물건의종류    | 구조 및 규격   | 수량(㎡)   | 소 유 자       |       | 비고 |
|----------|-----------|----|--------|----------|-----------|---------|-------------|-------|----|
|          | 읍면        | 리  | 지번     |          |           |         | 주 소         | 성 명   |    |
| 1        | 봉화        | 포저 | 123-14 | 울타리(방진망) | 102 × 3.5 | 357(일괄) | 봉화읍 포저리 123 | (주)삼영 |    |
| 2        | "         | "  | 123-14 | 관정       | 지하수       | 1식      | "           | "     |    |
| 3        | "         | "  | 136    | 간판       | 철재(2×7)   | 1식      | 봉화읍 포저리 136 | 김중섭   |    |
| 4        | "         | "  | 136    | 주름관      |           | 1식      | "           | "     |    |
| 5        | "         | "  | 136    | 취퐁나무     |           | 1식      | "           | "     |    |

안동시 고시 제2004-14호

### 안동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안동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신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4. 4. 19.

안 동 시 장

1.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 시설의 정비에 관한 계획으로서 국토34호선 확장에 따른 안동도시 계획시설(학교) 결정면적 감소에 따른 시설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과 지형도면승인

2. 안동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가. 공공·문화체육 시설

○ 학 교

| 구 분 | 도면표시<br>번 호 | 시 설 명<br>시 설 명 | 시 설 의<br>세 분 | 위 치       | 면 적 (㎡) |         |         | 비 고                              |
|-----|-------------|----------------|--------------|-----------|---------|---------|---------|----------------------------------|
|     |             |                |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기정  | D-1         | 안동대학교          | 대 학 교        | 송천동 388일원 | 876,165 | 감)2,558 | 873,607 | 경북고시 제2001-133호<br>(2001. 5. 25) |

## ○ 안동대학교 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

| 구 분    | 도면표시<br>번 호 | 시 설 의<br>세 분 | 위 치        | 면 적 (㎡)   |          |           | 비 고 |
|--------|-------------|--------------|------------|-----------|----------|-----------|-----|
|        |             |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계      |             |              |            | 876,165.0 | 감)2,558  | 873,607.0 |     |
| 교육기본시설 |             |              |            | 33,506.2  | 증)526.38 | 34,032.58 |     |
| 기정     | 1           | 인 문 학 관      | 송천동 388 일원 | 1,939.1   | —        | 1,939.1   |     |
| 기정     | 2           | 사 범 학 관      | 송천동 388 일원 | 1,924.0   | —        | 1,924.0   |     |
| 기정     | 3           | 자 연 1 호 관    | 송천동 388 일원 | 2,750.7   | —        | 2,750.7   |     |
| 기정     | 9           | 예 능 학 관      | 송천동 388 일원 | 1,677.2   | —        | 1,677.2   |     |
| 기정     | 12          | 사 회 학 관      | 송천동 388 일원 | 2,320.7   | —        | 2,320.7   |     |
| 기정     | 19          | 자 연 2 호 관    | 송천동 388 일원 | 1,514.9   | —        | 1,514.9   |     |
| 기정     | 21          | 원예육종과 실습장    | 송천동 388 일원 | 48.0      | —        | 48.0      |     |
| 기정     | 24          | 공 학 관        | 송천동 388 일원 | 1,653.6   | —        | 1,653.6   |     |
| 기정     | 31          | 유 리 온 실      | 송천동 388 일원 | 135.0     | —        | 135.0     |     |
| 기정     | 32          | 생활과학대학       | 송천동 388 일원 | 2,026.2   | —        | 2,026.2   |     |
| 기정     | 33          | 과중량실험동       | 송천동 388 일원 | 543.1     | —        | 543.1     |     |
| 기정     | 34          | 온 실 2        | 송천동 388 일원 | 729.3     | —        | 729.3     |     |
| 기정     | 36          | 자동차실습동       | 송천동 388 일원 | 302.4     | —        | 302.4     |     |
| 기정     | 38          | 제 2 공 학 관    | 송천동 388 일원 | 1,537.9   | —        | 1,537.9   |     |
| 기정     | 39          | 공동실험실습관      | 송천동 388 일원 | 1,354.1   | —        | 1,354.1   |     |
| 기정     | 44          | 한 의 대 학 관    | 송천동 388 일원 | 3,550.0   | —        | 3,550.0   |     |
| 기정     | 45          | 공 장 동        | 송천동 388 일원 | 1,000.0   | —        | 1,000.0   |     |
| 기정     | 47          | 합 동 강 의 동    | 송천동 388 일원 | 1,500.0   | —        | 1,500.0   |     |
| 기정     | 50          | 교양학관신축       | 송천동 388 일원 | 2,100.0   | —        | 2,100.0   |     |
| 기정     | 51          | 사회학관(법정)신축   | 송천동 388 일원 | 1,350.0   | —        | 1,350.0   |     |

| 구 분     | 도면표시<br>번 호 | 시 설 의<br>세 분 | 위 치        | 면 적 (㎡)   |             |          | 비 고 |
|---------|-------------|--------------|------------|-----------|-------------|----------|-----|
|         |             |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기정      | 52          | 체 육 학 관      | 송천동 388 일원 | 700.0     | —           | 700.0    |     |
| 기정      | 53          | 예술대학증축       | 송천동 388 일원 | 1,350.0   | —           | 1,350.0  |     |
| 기정      | 54          | 농업환경대학       | 송천동 388 일원 | 1,500.0   | —           | 1,500.0  |     |
| 신설      | 58          | 인문대연구동       | 송천동 388 일원 | —         | 증) 526.38   | 526.38   |     |
| 지 원 시 설 |             |              |            | 58,227.01 | 증) 4,666.19 | 62,893.2 |     |
| 기정      | 4           | 고 시 원        | 송천동 388 일원 | 444.2     | —           | 444.2    |     |
| 기정      | 5           | 파 위 플 랜 트    | 송천동 388 일원 | 748.7     | —           | 748.7    |     |
| 기정      | 6           | 후 문 수 위 실    | 송천동 388 일원 | 32.2      | —           | 32.2     |     |
| 기정      | 7           | 펄 프 실        | 송천동 388 일원 | 32.4      | —           | 32.4     |     |
| 기정      | 8           | 학 생 회 관      | 송천동 388 일원 | 1,359.2   | —           | 1,359.2  |     |
| 기정      | 10          | 도 서 관        | 송천동 388 일원 | 1,878.4   | —           | 1,878.4  |     |
| 기정      | 11          | 체 육 관        | 송천동 388 일원 | 2,232.0   | —           | 2,232.0  |     |
| 기정      | 13          | 정 문 수 위 실    | 송천동 388 일원 | 31.3      | —           | 31.3     |     |
| 기정      | 14          | 남학생기숙사       | 송천동 388 일원 | 1,732.9   | —           | 1,732.9  |     |
| 기정      | 15          | 대 학 본 부      | 송천동 388 일원 | 1,676.0   | —           | 1,676.0  |     |
| 기정      | 16          | 종합운동장및본부석    | 송천동 388 일원 | 15,840.0  | —           | 15,840.0 |     |
| 기정      | 17          | 기숙사식당동       | 송천동 388 일원 | 659.3     | —           | 659.3    |     |
| 기정      | 18          | 월 계 관        | 송천동 388 일원 | 254.1     | —           | 254.1    |     |
| 기정      | 20          | 농업특성화연구센터    | 송천동 388 일원 | 534.3     | —           | 534.3    |     |
| 기정      | 22          | 소 운 동 장      | 송천동 388 일원 | 6,340.0   | —           | 6,340.0  |     |
| 기정      | 23          | 여학생기숙사       | 송천동 388 일원 | 1,190.8   | —           | 1,190.8  |     |
| 기정      | 25          | 솔 피 문 화 관    | 송천동 388 일원 | 3,046.3   | —           | 3,046.3  |     |
| 변경      | 26          | 국 제 교 류 관    | 송천동 388 일원 | 1,000.0   | 증) 1,909.20 | 2,909.20 |     |
| 기정      | 27          | 학 군 단        | 송천동 388 일원 | 489.6     | —           | 489.6    |     |
| 기정      | 28          | 제 3 식 당      | 송천동 388 일원 | 950.4     | —           | 950.4    |     |
| 기정      | 29          | 역 동 서 원      | 송천동 388 일원 | 230.1     | —           | 230.1    |     |
| 기정      | 35          | 외국어교육관       | 송천동 388 일원 | 936.4     | —           | 936.4    |     |
| 기정      | 37          | 복 지 관        | 송천동 388 일원 | 901.9     | —           | 901.9    |     |

| 구 분     | 도면표시<br>번 호 | 시 설 의<br>세 분 | 위 치        | 면 적 (㎡)    |            |            | 비 고 |
|---------|-------------|--------------|------------|------------|------------|------------|-----|
|         |             |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기정      | 40          | 지 역 협 력 관    | 송천동 388 일원 | 1,022.0    | —          | 1,022.0    |     |
| 기정      | 41          | 정 보 통 신 원    | 송천동 388 일원 | 1,202.75   | —          | 1,202.75   |     |
| 변경      | 42          | 기 숙 사 증 축    | 송천동 388 일원 | 1,491.75   | 증)184.36   | 1,676.11   |     |
| 기정      | 43          | 도 서 관 증 축    | 송천동 388 일원 | 2,459.61   | —          | 2,459.61   |     |
| 기정      | 46          | 노 천 극 장      | 송천동 388 일원 | 6,340.0    | —          | 6,340.0    |     |
| 기정      | 48          | 남자기숙사증축      | 송천동 388 일원 | 2,100.0    | —          | 2,100.0    |     |
| 기정      | 49          | 교 수 회 관      | 송천동 388 일원 | 900.0      | —          | 900.0      |     |
| 기정      | 55          | 동 문 수 위 실    | 송천동 388 일원 | 50.0       | —          | 50.0       |     |
| 기정      | 56          | 테니스장관리동      | 송천동 388 일원 | 120.4      | —          | 120.4      |     |
| 신설      | 57          | 음 악 관        | 송천동 388 일원 | —          | 증)2,120.18 | 2,120.18   |     |
| 신설      | 59          | 체 력 단 련 장    | 송천동 388 일원 | —          | 증) 452.45  | 452.45     |     |
| 기 타 시 설 |             |              |            | 784,431.79 | 감)7,750.57 | 776,681.22 |     |
| 기정      | 60          | 주 차 장        | 송천동 388 일원 | 5,620.0    | —          | 5,620.0    |     |
| 변경      | 61          | 도 로          | 송천동 388 일원 | 44,980.0   | 감)1,410.9  | 43,569.1   |     |
| 변경      | 62          | 녹 지          | 송천동 388 일원 | 733,831.79 | 감)6,339.67 | 727,492.12 |     |

## 3. 금회 결정변경 조서

| 구 분 | 도면표시<br>번 호 | 시 설 의<br>세 분 | 위 치        | 면 적 (㎡)    |            |            | 비 고 |
|-----|-------------|--------------|------------|------------|------------|------------|-----|
|     |             |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변경  | 26          | 국 제 교 류 관    | 송천동 388 일원 | 1,000.0    | 증)1,909.20 | 2,909.20   |     |
| 변경  | 42          | 기 숙 사 증 축    | 송천동 388 일원 | 1,491.75   | 증)184.36   | 1,676.11   |     |
| 신설  | 57          | 음 악 관        | 송천동 388 일원 | —          | 증)2,120.18 | 2,120.18   |     |
| 신설  | 58          | 인문대연구동       | 송천동 388 일원 | —          | 증) 526.38  | 526.38     |     |
| 신설  | 59          | 체 력 단 련 장    | 송천동 388 일원 | —          | 증) 452.45  | 452.45     |     |
| 변경  | 61          | 도 로          | 송천동 388 일원 | 44,980.0   | 감)1,410.9  | 43,569.1   |     |
| 변경  | 62          | 녹 지          | 송천동 388 일원 | 733,831.79 | 감)6,339.67 | 727,492.12 |     |

## 가. 변경 사유서

| 도면표시번호 | 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 D-1    | 안동대학교 | A=876,165㎡<br>→ 873,607㎡<br>(감 2,558㎡) | 국도 34호선 확장에 따른 시설결정면적 감소<br>(388-5번지, 2004. 1. 6 안동시 소유권 이전) |

4. 기타 관계도서는 안동시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5. 동법 제32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은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않음.

구미시 고시 제2004-28호

## 구미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 고시

구미도시계획시설인 학교(“가칭” 오태동부초등학교)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004. 4. 19.

구 미 시 장

## 1. 구미도시계획시설 학교(“가칭” 오태동부 초등학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내용

| 구 분 | 시설의<br>구 분 | 시 설 명             | 위 치                 | 면 적 (㎡) |      |        | 최 초<br>결정일                          | 비 고      |
|-----|------------|-------------------|---------------------|---------|------|--------|-------------------------------------|----------|
|     |            |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 변경  | 학교         | “가칭”<br>오태동부 초등학교 | 구미시 오태동<br>618번지 일원 | 17,093  | 증 76 | 17,169 | 2002. 12. 30<br>구미시 고시<br>제2002-69호 | 면적<br>증가 |

## 2. 변경사유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회사 구적에 의한 면적결정)고시후 토지지적 확정측량 및

지적 공부정리에 따른 면적증가(시설부지의 구역경계 변경없음)

### 3. 지적승인 도면 : 게재생략

관계도서를 구미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영주시 고시 제2004-156호

## 영주 풍기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을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은 영주시청(도시개발과 ☎054-639-634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4. 4. 19.

영 주 시 장

###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

| 구 분      | 도면표시<br>번 호                                                                                                                                  | 시 설 명 | 시 설 의<br>세 분 | 위 치          | 면 적 (㎡) |         |       | 최 초<br>결정일             | 비 고 |
|----------|----------------------------------------------------------------------------------------------------------------------------------------------|-------|--------------|--------------|---------|---------|-------|------------------------|-----|
|          |                                                                                                                                              |       |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 변경       | 1                                                                                                                                            | 시장    | 소매시장         | 성내리 35-10 일원 | 8,100   | 감)3,040 | 5,060 | 경고 제7호<br>(’85. 1. 10) |     |
| 변경<br>사유 | 도시계획상 시장시설에 편입된 풍기읍 동부리 550번지 일원의 토지는 종교활동에 이용되고 있는 부지로서, 계속하여 도시계획시설(시장)로 관리할 시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불가하므로 도시관리계획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시장시설에서 제척함 |       |              |              |         |         |       |                        |     |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축척1/1,200 지형도면에 결정고시하고 지형도면은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함(실음 생략)

# 공 고

칠곡군 공고 제2004-76호

## 도시계획사업시행 공람 공고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 관계서류를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에는 공람 기간내 의견서를 칠곡군청 도시주택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 4. 19.

칠 곡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붙임과 같음
2.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광장조성사업
3. 명 칭 : 붙임과 같음
4. 사업의 규모 : 붙임과 같음
5. 사업 시행자 : 칠곡군수
6. 사업착수 및 준공년월일 : 붙임과 같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서 : 공람 장소에 비치
8.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손실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 : 공람 장소에 비치
9.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공휴일 제외)
10. 공람장소 : 칠곡군청 도시주택과
11.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서 : 공람장소에 비치

## 도시계획사업시행 계획

| 사 업 명(명칭)                   | 위 치 |    | 사업의 규모                | 착수, 준공<br>년 월 일     | 비 고 |
|-----------------------------|-----|----|-----------------------|---------------------|-----|
|                             | 읍면  | 리  |                       |                     |     |
| 계                           |     |    | 11 지구                 |                     |     |
| 왜관시가지 관문도로<br>확 · 포장공사      | 왜관  | 왜관 | L=1,220m,<br>B=23m    | 2004. 4<br>2005. 12 |     |
| 왜관파출소-담배인삼공사간<br>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 왜관  | 왜관 | L=329m,<br>B=6-8m     | 2004. 4<br>2005. 3  |     |
| 우방로-철도변간<br>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 왜관  | 왜관 | L=228m,<br>B=8.0m     | 2004. 4<br>2004. 12 |     |
| 오성아파트-우방로간<br>도시 계획도로개설공사   | 왜관  | 왜관 | L=246m<br>B=8.0m      | 2004. 4<br>2004. 12 |     |
| 북부정류소-능금조합간<br>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 왜관  | 왜관 | L=130m,<br>B=10m      | 2004. 4<br>2005. 3  |     |
| 왜관2호광장조성                    | 왜관  | 왜관 | A=4,321m <sup>2</sup> | 2004. 4<br>2004. 12 |     |
| 대화아파트-귀바우간<br>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 왜관  | 석전 | L=365m,<br>B=12m      | 2004. 4<br>2004. 12 |     |
| 왜관병원-석전천주교회간<br>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 왜관  | 석전 | L=160m,<br>B=8.0m     | 2004. 4<br>2005. 3  |     |
| 북삼읍사무소-우회도로간<br>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 북삼  | 인평 | L=170m,<br>B=10m      | 2004. 4<br>2004. 12 |     |
| 약목역앞-약목중 · 고간<br>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 약목  | 북성 | L=104m,<br>B=10m      | 2004. 4<br>2004. 12 |     |
| 석전중학교 진이도로<br>개설공사          | 왜관  | 석전 | L=38m,<br>B=12m       | 2004. 4<br>2004. 9  |     |

포항시 공고 제2004-224호

###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

포항시고시 제1999-288('99. 5. 25)호로 실시계획인가한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사업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를 공고합니다.

2004. 4. 19.

포 항 시 장

1. 사업시행지 : 포항시 북구 두호동 990-9번지 일원

2. 준공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녹지)

나. 명 칭 : 중로2류 50호선, 소로2류 267호선, 녹지

3. 사업의 규모

가. 도 로 :  $L=493m$ ,  $B=8\sim 15m$

나. 녹 지 :  $A=1,997m^2$

4. 사업시행자 : 정리회사(주)우방 관리인 김준철

5. 착수 및 준공

가 착 수 : 2000. 5. 1

나 준 공 : 2004. 4. 7

※ 기타 상세한 사항은 포항시청 도시계획과(☎054-245-63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시 공고 제2004-118호

###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자료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에서 시행할 안동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수립 및 토지적성평가용역 입찰에 참

가할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4. 19.

## 안 동 시 장

###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시행기관 : 안동시

나. 용역명 : 안동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수립 및 토지적성평가 용역

다. 용역의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라 변경된 토지이용체계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합리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

- 위 치 : 경상북도 안동시 행정구역 전역

- 주요내용

-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 면적 약 1,520.40km<sup>2</sup>
- 토지적성평가 : 관리지역 약 461.39km<sup>2</sup>

라. 사업추진 예정기간 : 착수일로부터 40개월

마. 예산규모

- 총사업비 : 2,853백만원(우리시 예산사정상 달라질 수 있음)
- 당해연도 예산액 : 300백만원

바. 입찰 예정시기 : 2004년 5월 예정

###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부에 건설부문(도시계획, 조경, 교통, 도로 및 공항, 상하수도)에 신고하고 각 분야별기술사를 보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서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신고한 업체.
- 상기 “가”항의 자격을 갖춘 타 시·도업체가 참여할 경우에는 경상북도 소재 1개

업체(“가”항 건설부문 신고 및 교통·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신고한 업체)와 공동 참여(지역업체 참여비율 49% 이상, 공동이행방식)하여야 하고, 이때 대표업체는 “가”항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하며 이때 공동참여 구성원의 수는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안내

- 안내서 교부 및 등록 : 2004년 4월 27일(09:00~18:00) 까지
- 평가서 제출기간 : 2004년 5월 10일(18:00)까지
- 안내서 교부 및 제출장소 : 안동시청 도시과
- 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인터넷 게시 : 주소 <http://www.andong.go.kr/> (안동뉴스 → 고시공고)

### 3.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가. 평가방법 : 건설기술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 및 절차에 의함.

나. 업체선정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여 일정점수(85.72점)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대상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통보가 없을시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 4. 기타사항

가. 안내서 교부 및 등록시에는 업체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하여야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참가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참가등록된 업체에 한하여 안내서 교부 및 평가서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참가등록시에는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수첩 사본, 해당분야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 법인등기부등본)과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평가서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마. 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업체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본 예산액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우리시 도시과(☎054-851-63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주시 공고 제2004-287호

## 공인 신조 공고

경주시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조한 공인을 동 조례 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4. 19.

경 주 시 장

## 1. 신조공인명 및 인영

| 공 인 명             | 인 영                                                                                | 사용개시일                  | 비고 |
|-------------------|------------------------------------------------------------------------------------|------------------------|----|
| 경주시공유토지<br>분할위원회인 |  | 2004. 4. 12<br>09 : 00 |    |

시군소방서

공 고

영천소방서 공고 제2004-1호

## 소방시설공사업 신규등록업체 공고

소방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신규등록업체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4. 19.

영 천 소 방 서 장

1. 업 체 명 : 명진전기공사
2. 소 재 지 : 영천시 조교동 292-4번지
3. 대 표 자 : 박명진
4. 업 종 : 일반소방시설공사업
5. 등록번호 : 영천 제2004-1호
6. 등록일자 : 2004. 4. 7

구미소방서 공고 제2004-3호

### 소방시설 설계업(폐업) 공고

소방법 시행규칙 제69조의 10의 규정에 의거 소방시설설계업 폐업 대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4. 19.

구 미 소 방 서 장

#### 1. 폐업내용

| 대 상 명          | 영업소 소재지           | 대 표 자                   | 등록번호     | 등록업종 및 분야            |
|----------------|-------------------|-------------------------|----------|----------------------|
| 구미종합건축사<br>사무소 | 구미시 송정동<br>35-4번지 | 전 중 만<br>(640525-*****) | 제1998-2호 | 소방시설설계업<br>3급(기계·전기) |

2. 폐업일자 : 2004. 4. 8

경주소방서 공고 제2004-12호

## 소방시설감리업 변경등록업체 공고

소방법 제65조의 2제1항 규정에 의거 소방시설감리업 변경등록 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4. 19.

경 주 소 방 서 장

1. 업체명 및 대표자 : (주)성문기술단, 정경채, 도화삼
2. 등록번호 : 경주 제2002-3호
3. 소 재 지 : 경주시 동천동 884-13번지
4. 업 종 : 소방시설감리업 2급(기계, 전기)
5. 변경사항

| 변경사항         | 변경전                                                                                                           | 변경후                                                                                                               | 변경일자          |
|--------------|---------------------------------------------------------------------------------------------------------------|-------------------------------------------------------------------------------------------------------------------|---------------|
| 보조기술<br>인력변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광재(750527-*****)</li> <li>- 전기기사</li> <li>(99203160040F)</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상현(351226-*****)</li> <li>- 전기공사기사2급</li> <li>(75242401507C)</li> </ul> | 2004.<br>4. 7 |

6. 신고일자 : 2004. 4. 10

기 타

고 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4-192호

## 고 시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4. 4. 19.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                                                             |
|----------------|-------------------------------------------------------------|
| 하천의 명칭         | 형산강(국가하천)                                                   |
| 점용자 성명<br>및 주소 | 주소 : 포항시 남구 호동 산29번지<br>성명 : 포항도시가스(주)대표 정동운                |
| 점용면적 및 위치      | 면적 : 시설물 149.59㎡, 일시 3,344.2㎡<br>위치 : 포항시 남구 중명리 221-3번지 지선 |
| 점용 목적 및 개요     | 목적 : LNG(가스)관로 이설<br>개요 : LNG관로 L=166.21m(D=600mm)          |
| 점용기간           | 5년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4-193호

## 고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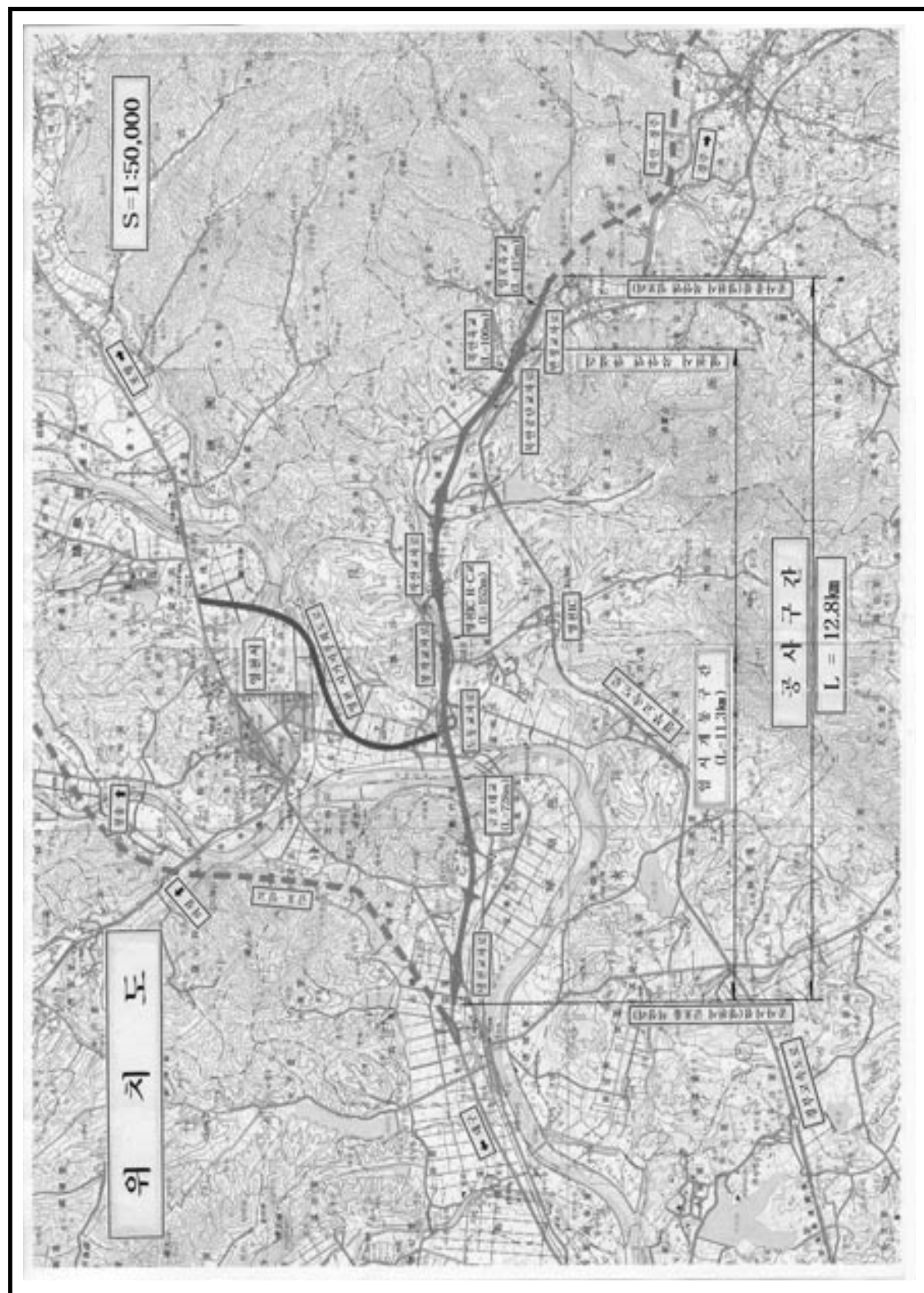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4. 4. 19.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                                           |
|----------------|-------------------------------------------|
| 하천의 명칭         | 형산강(국가하천)                                 |
| 점용자 성명<br>및 주소 | 주소 : 포항시 남구 괴동동 1번지<br>성명 : (주)포스코 대표 강창오 |





인천광역시계양구 공고 제2004-127호

## 공유재산(의회청사)매각 입찰 공고

## 1. 매각재산의 표시

| 소재지                     | 면적(㎡) |          | 예정가격(원)       | 입찰방법   | 입찰보증금          | 비고 |
|-------------------------|-------|----------|---------------|--------|----------------|----|
|                         | 대지    | 건물       |               |        |                |    |
| 인천광역시 계양구<br>작전동 855-23 | 804.4 | 3,895.21 | 4,199,744,150 | 일반경쟁입찰 | 입찰금액의<br>5% 이상 |    |

## 2. 입찰등록 및 입찰일시

| 구분 | 입찰등록기간                       | 입찰일시                    | 계약체결기간                 | 입찰등록장소      | 입찰장소         |
|----|------------------------------|-------------------------|------------------------|-------------|--------------|
| 1차 | 2004. 4. 8<br>~ 4. 28 16:00  | 2004. 4. 29(목)<br>15:00 | 2004. 4. 30 ~<br>5. 10 | 계양구청<br>총무과 | 구청 4층<br>회의실 |
| 2차 | 2004. 4. 29<br>~ 5. 19 16:00 | 2004. 5. 20(수)<br>15:00 | 2004. 5. 21 ~<br>5. 31 | 계양구청<br>총무과 | 구청 4층<br>회의실 |

※ 1회차 입찰에 낙찰자가 없을 경우 2회차 입찰 실시

## 3. 입찰참가자격

가. 우리구에서 제시한 입찰조건을 수락하고 소정의 서류를 구비,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찰등록을 필한 자

##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의 입찰자중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단, 최고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현장에서 추첨으로 결정)

## 5.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등록 할 때

- 입찰참가신청서 1부(소정양식)
- 주민등록등본 1통(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국가가 발행한 신분증)
- 대리입찰의 경우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 1부.

나. 입찰할 때

- 입찰서 1부(소정양식 1부)
- 입찰보증금 납부영수증 또는 입찰보증금 보증서(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 입찰참가 신청시 사용한 인감도장 및 신분증
- 통장사본 1부(입찰보증금을 환급 받을 입찰참가자 통장)

다. 계약할 때

- 입찰등록시 사용한 인감도장 및 신분증 지참
- 인감증명서 1통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 입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 금액을 우리구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구좌 납부영수증 또는 입찰보증금 보증보험증권을 입찰 참가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처리

-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전환
- 유찰 및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 본인 통장 계좌로 5일내 반환

7. 계약체결 및 입찰보증금의 귀속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내에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우리구로 귀속됩니다.

8. 매각대금 납부방법

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보증금을 공제한 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내 완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구로 귀속됩니다.

9. 소유권이전

가. 매각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및 건물인도는 매각대금 완납후 가능하며 본 재산에

대한 명도에 따른 제 비용과 절차는 낙찰자 본인의 부담으로 하되 건물명도는 의회청사 이전후 명도한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에 있어 우편등록은 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나. 매매재산은 공부상 표시면적으로 하며 별도의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므로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입찰유의사항 숙지, 각종 공부의 열람 및 현장 답사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결과로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명도조건 : 매매재산은 현재 계양구의회 청사로 사용중이며 2004년 7월에 청사이전 계획이므로 이전과 동시 명도를 조건으로 함.

라. 입찰공고문은 우리구 홈페이지(<http://gyeyang.go.kr>)로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총무과(☎032-450-5172~5)로 문의 바랍니다.

2004. 4. 19.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

## 경상북도 중소기업 자금지원

우리도에서는 자금난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중소기업에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을 위하여 융자 대상업체를 모집합니다.

### □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자금

- 지원규모 : 480억원
- 지원대상 :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산업등
- 융자금액 : 11억원이내(시설 8, 운전 3), 대출금리(변동 5.7%)
- 신청서 접수 : 경상북도 기업노동과(☎053-950-3243)

### □ 벤처기업 육성자금

- 자금규모 : 30억원
- 융자금액 : 3억원이내, 대출금리(년 3%), 2년거치 3년상환
- 신청서 접수 : 경상북도 과학기술진흥과(☎053-950-2795)

### □ 유통업경쟁력 강화사업 자금

- 지원규모 : 연간 85억원
- 대상 및 지원한도
  - 시장재개발·재건축(40억원), 임시시장 설치(5억원)
  - 공동창고 설치(8억원), 점포시설 개선(1억원)
- 융자조건 : 대출금리(년 5.17%)
- 신청서 접수 : 경상북도 경제교통정책과(☎053-950-2793)

### □ 중소기업 운전자금

- 대 상 : 제조·건설·무역·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운수업 등
- 융자한도액 : 일반업체(3억원내), 우대업체(5억원내)
- 이차보전 : 1년간 3%
- 신청서 접수 : 시군 중소기업 지원부서

- 위의 자료는 경상북도보(2004. 1. 29자)에 상세히 게재되어 있습니다. -